

〈별첨 3〉

지방관공선 승선자배상 약관

1] 보통약관

제1조 (공제가입) 공제가입은 공제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의 가입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조 (약관의 제공) ①공제회는 공제가입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공제회비) ①공제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이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정기가입 신청 : 당해연도 3월 31일
2. 수시가입 신청 : 공제가입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

제4조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가입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가입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2조(가입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승선자배상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일임받은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합니다)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관공선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제1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제1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피공제자가 제2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이들의 법정대리인, 선장, 승무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승선한 승객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2017.02.10.삭제)
14.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선박이 습격, 포획, 나포 또는 억류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공제자가 입증한 때에는 정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9.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여객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8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동일합니다. 단, 이 공제계약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공제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공제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 (가입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가입시 관공선의 현황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가입후 알릴의무) ①공제가입이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승선자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선박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선박의 정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선박의 노선을 변경하였을 때
 6.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회비에 대하여는 제3조 (공제회비) 제2항에 따릅니다.
- ③회원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가입의 해지) ①회원은 피공제자의 폐업 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폐선과 법령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가입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가입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4조(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상당한 이유없이 제25조(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공제가입신청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공제회 직원이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가입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⑤ 제3항에 의한 가입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타인을 위한 공제가입) ①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가입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공제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공제가입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은 그 타인에게 공제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유지의무) 피공제자는 선박의 내항능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가입의 무효)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공제가입은 무효로 합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공제가입을 한 후에 승선자배상공제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6조 (공제회비의 환급) 공제가입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동의한 경우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20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의 지급) ①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②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상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보험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 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보험금의 부담) ①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 (대위권) ①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 (조사) ①보험사는 공제기간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보험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보험사가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공제내용의 교환) 보험사는 공제가입사항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회 또는 보험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27조 (관할법원) 공제가입에 관한 소송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 (약관의 해석) ①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② 특별 약관

① 구조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관공선승선자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9조(손해방지의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공제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승객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2.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제2조 (보상한도액) 보험사는 관습상의 비용에 관하여 피해승객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한 배상책임

13.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재물손해
18.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위탁재물 명세(위탁재물의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재물종류 : 재물수량 : 위탁자성명 : 기 타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기 타 :

④ 여객외 제3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선박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를 당해 선박에 승선한 여객외의 제3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